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곽동환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31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6. 1.

발의의원 : 곽동환 의원, 전홍배 의원,  
신달호 의원

## 1. 개정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추진하는 행복택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콜센터 등 사무실 관련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행복택시 사업운영을 위한 콜센터 등 사무실 관련 비용 지원 규정 신설(안 제7조2)

## 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대중교통”을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중교통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달성군수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수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제3항의”를 “제3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행복택시 사업 지원) 군수는 행복택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7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을 받고 그 사업을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사무실(콜센터 등)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 중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<u>대중교통</u>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의 운행과 행복택시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<u>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중교통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b>제3조(대상마을 선정) ①</b> <u>달성군수</u> 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관할 읍·면장으로부터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받아 그 지역에서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3조(대상마을 선정) ①</b> <u>대구광역시 달성군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6조(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)</b>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제3항의</u> 배분방법에 대하여 해당 마을주민들로부터 민원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읍·면장은 그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배분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<b>제6조(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)</b>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3항에</u> 따른 ----- ----- -----.</p>
<p>⑤ (생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제12조(준용)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의2(행복택시 사업 지원) 군수는 행복택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7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을 받고 그 사업을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사무실(콜센터 등)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-----  
----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---

□ 「지방자치법(법률)」 (2021.12.28. 타법개정, 2022.1.13. 시행)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□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법률)」 (2021.7.27. 일부개정, 2022.1.28. 시행)

제3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)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선(路線) 여객자동차운송사업: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(이하 "노선"이라 한다)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
2. 구역(區域) 여객자동차운송사업: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
3.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, 운행계통·운행시간·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

